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29
----------	-------

발의연월일 : 2026. 4. 6.

발 의 자 : 신장식 · 서왕진 · 백선희
김선민 · 차규근 · 김재원
황운하 · 강경숙 · 한창민
김준형 · 이용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모집·채용 등의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사용되는 경우에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과 함께 면접 영상 등의 자료가 제3자에게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모집·채용할 때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 모집·채용 관련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등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장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의안번호 제181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따른 일하는 사람을 모집 채용할 때에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실의 사전 고지
2. 면접·평가 등의 기준과 과정에 대한 설명의 제공
3.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한 근로자의 사전 동의
4. 모집·채용 관련 영상자료 등의 제3자 제공 및 공유 금지
5. 모집·채용 목적 달성 후 30일 이내 관련 자료의 삭제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